

7 공채시험 응시자의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

가. 영어능력검정시험

(1) 시험종류 및 응시계급별 기준점수

시험 종류		응시계급별 기준점수		
		5급	7급	9급
토 익 (TOEIC)	기준점수	700점 이상	570점 이상	470점 이상
	청각장애	350점 이상	285점 이상	235점 이상
토 플 (TOEFL)	기준점수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PBT 480점 이상 CBT 157점 이상 IBT 54점 이상	PBT 440점 이상 CBT 123점 이상 IBT 41점 이상
	청각장애	PBT 352점 이상 CBT 131점 이상	PBT 319점 이상 CBT 104점 이상	PBT 292점 이상 CBT 82점 이상
텝 스 (TEPS) (2018.5.12. 전에 실시 된 시험)	기준점수	625점 이상	500점 이상	400점 이상
	청각장애	375점 이상	300점 이상	240점 이상
신텁스 (新TEPS) (2018.5.12. 이후에 실시 된 시험)	기준점수	340점 이상	268점 이상	211점 이상
	청각장애	204점 이상	161점 이상	127점 이상
지텔프 (G-TELP)	기준점수	Level 2 65점 이상	Level 2 47점 이상	Level 2 32점 이상
플렉스 (FLEX)	기준점수	625점 이상	500점 이상	400점 이상
	청각장애	375점 이상	300점 이상	240점 이상

※ 듣기점수 적용 제외 청각장애 대상범위 안내

- 두 귀의 청력손실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인 사람
- 두 귀의 청력손실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전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함.

* 예) 올해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이면 인정

- * 2018.1.1. 이후 시행한 시험의 성적으로서, 시험시행기관의 정책에 따라 2020.1.1.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함.
- ※ 청각장애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표의 청각장애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 가능
- * 듣기점수 적용 제외 청각장애인 대상범위 안내
 - 두 귀의 청력손실 80dB 이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단, 원서점수 마감일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의 기준에 해당하여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 결정되어야 함)
 - 두 귀의 청력손실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단, 상기 내용에 해당 여부를 판단한 의사진단서 원본(별첨 참고) 필요)

(2)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

- 가) 원칙적으로 2018.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전일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 중 계급별 응시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 나) 2018. 1. 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하여 필기시험 전일까지 발표된 TOEFL 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도 인정
 - 다)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며, 정부기관(각 군 포함)·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 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 TOEIC, TOEFL, TEPS, G-TELP, FLEX 정규(정기)시험은 일반인 및 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 일정에 따라 매 시험마다 신규출제 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3) 시험성적 제출방법

- 가) 응시원서 작성 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명칭, 시험일자, 시험성적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의 경우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 성명을 기재하여야 함.

* 영어 성적 입력정보 : 시험종류, 시험일자, 점수(성적)

- 나) 원서접수 시 입력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또는 응시원서 접수 후 발표된 영어 성적을 등록할 경우는 반드시 추가등록을 해야함.

- * 국방부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http://recruit.mnd.go.kr>)를 방문하여 <My Page> → <한국사/영어 성적현황>에서 수정
- * 등록기간(원서접수 기간 중) : '21.5.7.(금) ~ 5.12.(수)
- * 추가등록기간 : '21. 7. 24.(토) 09:00 ~ 7. 28.(수) 18:00 / 기간내 중단 없음
- 다) 청각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본 중 1부와 영어능력검정시험 공인성적표 사본 1부를 '21. 5. 25.(화) ~ '21. 5. 27.(목) 까지(우체국 소인분 기준) (우) 0438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군무원채용담당 앞으로 등기 제출
- 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 외 완화된 기준점수 적용대상자는 별첨에서 안내된 서류와 영어능력검정시험 공인성적표 사본 1부를 함께 구비하여 다)항의 안내 기간 및 주소로 제출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1) 시험종류 및 응시계급별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응시계급별 기준등급	
	7급	9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4급 이상

- * 2020년 5월 이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급수체계 개편에 따른 시험종류의 변동(초·중·고급 3종 → 기본·심화 2종)과 상관없이 기준(인증)등급을 그대로 적용함.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전일까지 접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등급)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함.

* 예) 올해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이면 인정

(3) 시험성적 제출방법

- 가) 응시원서 작성 시 해당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종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인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한국사 성적 입력정보 : 인증번호(기관 발급), 급수(성적)**

- 나) 원서접수 시 입력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또는 응시원서 접수 후 발표된 한국사 성적을 등록할 경우는 반드시 추가등록을 해야함.

- ※ 국방부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http://recruit.mnd.go.kr>)를 방문하여 <My Page> → <한국사/영어 성적현황>에서 수정
- ※ 등록기간(원서접수 기간 중) : '21.5.7.(금) ~ 5.12.(수)
- ※ 추가등록기간 : '21. 7. 24.(토) 09:00 ~ 7. 28.(수) 18:00 / 기간내 중단 없음

다. 시험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응시원서 접수 시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